



**1. 민법 제766조 (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)**

(1)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.

(2)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.

**2. 원칙 독립적으로 판단 - 대법원 1998. 11. 10. 선고 98다34126 판결**

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의 단기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는 전혀 별도 관점에서 설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시효제도이므로

그 시효기간은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피해자

나 그 법정대리인이 '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'로부터 진행한다.

### 3. 기산점 판단기준 - 대법원 2008. 4. 24. 선고 2006다30440 판결

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76조 제1항 소정의 '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'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,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,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,

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 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.

#### 4. 형사사건의 경과를 고려한 사례

##### 대법원 2008. 4. 24. 선고 2006다30440 판결

긴급체포의 적법 여부는 주로 긴급체포의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서 일반인을 기준으로 볼 때 불법행위 당시 그 법적 평가의 귀추가 불확실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, 실제로 관련 형사재판에서 긴급체포의 적법성이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로 인한 손해 등을 현실적·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.

##### 서울고등법원 2002나22030 판결

수사기관이 위 피고들의 허위진술을 받아들여 무혐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달리 마땅한 증거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전혀 실익이 없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보여지는바,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로 인한 소멸시효

기간은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법리를 감안하더라도,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는 검찰의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2000. 4. 28. 또는 공소제기일인 2000. 10. 12.경부터 비로소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.

### 피고인(가해자)의 혐의 적극 부인 + 1심 무죄 판결 BUT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 사례

대법원 - 항소심 유죄 판결을 한 때 단기 소멸시효 기산으로 판결

가해자가 부인하는 상황에서 성추행, 강제추행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 기산점은 불법행위, 고소, 기소일이 아니라 형사재판 1심 유죄 판결일로 인정

의정부지방법원 판결 - 가해자가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최초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공소가 제기된 후 시간이 꽤 경과해 유죄판결이 확정됐다. 이와 같은 정황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는 형사재판 제1심 판결이 있던 2017년 1월에야 비로소 가해자의 불법행위 요건 사실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맞고,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.

## 5. 형사 유죄판결 피고인 가해자의 소멸시효 항변 - 신의칙 위반 권리남용으로 불허

### 서울고등법원 2002나22030 판결

피고들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자로서 위 수사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, 피고들이 이제 와서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원고의 배상청구를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.

조사자문, 형사/민사소송, 손해배상, 화해계약, 합의, 공탁 등 One-Stop 대응

T. 02-591-0657 E. [kkh@kasanlaw.com](mailto:kkh@kasanlaw.com) H. [www.kasanlaw.com](http://www.kasanlaw.com)